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kl(개)	
	수송장비 수(대)		자본금(억원)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